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9. 11.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3년 8월 29일
- 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 : 2013년 9월 5일
- 라. 상정일자 :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13년 9월 9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도시국장 박문희)

가. 제안이유

이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계획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현 추진단계에서는 조례운영이 형식화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본 폐지조례안은 재정비촉진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대해 협의·자문하기 위하여 사업협의회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우리구는 2008. 4. 24 제정·시행되었으며, 관련 사업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등 조례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, 2011년 이후 사업협의회 기능이 형식화되는 등 운영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31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3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구성·운영된 사업협의회(2008.10.20제정)가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2011년 이후 사업협의회 활동이 저조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 의 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3.7.25 ~ 8.14, 20일간) : 의견없음

(2) 규제심사 : 대상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4) 성별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